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2. 3.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 11. 16.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1. 11. 17.

다. 상정일자: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건설위원회(2021.12.3.)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가. 제안이유

현행 「도로명주소법」이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정하여 도로명주소 업무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조례 제명 및 용어의 변경

개정 법률에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주소정보시설’로 정의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각 조항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주소정보시설’로 용어 정리

2)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안 제2조, 제5조, 제13조)에 관한 사항 정비

- 주소정보의 사용분야 확대
 - 주소정보의 생활화 촉진을 위한 지원
 -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교육·홍보
- 3) 건물번호판, 사물주소판 제작비용 및 광고비용의 산정 규정(안 제3조, 제4조)
 - 4) 주소정보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안 제6조 내지 제11조)
 - 5)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손해배상 공제 사항
(안 제12조)
 - 6) 주소정보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검토보고(전문위원 최국모)

- 동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이 전면 개정(법률 제 17574호, 2020.12.8. 공포,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2021년 11월 16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7일 행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개정 주요내용을 조문별로 살펴보면,
 - 개정된 법률에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주소정보시설’로 정의함에 따라 제명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있는 바, 동 개정조례안에 도로명주소뿐만 아니라 기초번호, 국가지점번호, 사물주소 등 각종 주소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제명의 변경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2조, 제5조, 제13조에서는 각각 주소정보 사용분야의 확대와 주소정보 사용의 지원 시책을 열거하고 있으며, 주소정보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교육 등의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이 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제작비용에 대하여 그 산정기준과 징수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이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정하는 광고의 비용을 무료의 경우와 유료의 경우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유료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광고비용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소정보위원회’에서 정한다고 하였던 바, 다른 자치구 입법례를 살펴보면 비용을 정하는 주체를 ‘구청장’으로 규정한 경우와 ‘위원회’로 규정한 경우’로 나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행정안전부 표준안과 달리 ‘위원회’로 규정하고 있는 동 개정 조례안은 전문성을 담보하고 민주적 결정을 촉진시키는 위원회의 기능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개정으로 판단됨.
-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이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위하여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51조제3항 각 호의 내용과 개정안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법 제29조1)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주소정보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맞게 규정하고 있음.

1) 「도로명주소법」 제29조(주소정보위원회) ① 주소정보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주소정보위원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주소정보위원회를 두며, 시·군·자치구에 시·군·구주소정보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시·도주소정보위원회 및 시·군·구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에 따른 시·도주소정보위원회 및 시·군·구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안 제12조는 법 제31조²⁾에 따라 구청장이 주소정보시설³⁾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13조는 주소정보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14조는 주소정보 업무를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하고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이와 같이 살펴본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있으며, 현행 도로명주소체계의 안정화와 활용도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

2) 「도로명주소법」 제31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손해배상 공제가입, 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3) 「도로명주소법」 제2조(정의) 12. “주소정보시설”이란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국가지점번호판, 사물주소판 및 주소정보안내판을 말한다.

【관계법령】

〈도로명주소법〉 [시행 2021. 6. 9.] [2020. 12. 8. 전부개정]

제9조(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도로명주소를 안내하거나 구조·구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주(支柱) 또는 시설(이하 “지주등”이라고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에 지주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거쳐 해당 위치에 맞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지주등에 표기하여야 한다.

1. 가로등·교통신호등·도로표지 등이 설치된 지주
2. 전주 및 도로변 전기·통신 관련 시설

제19조(도로명주소의 사용 등) ①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한다.

②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표기 및 위치 안내를 할 때에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및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상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의 표기
2. 각종 인허가 등 행정처분 시 주소 표기
3. 공공기관의 주소 표기
4. 공문서 발송 시 주소 표기
5. 위치안내표시판의 주소 표기 및 위치 안내
6.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표기 및 위치 안내
7. 그 밖에 주소 표기 및 위치 안내와 관련된 사항

제22조(국가기초구역 등의 설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기초구역번호(각 국가기초구역마다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정 등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고시된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기초구역번호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계구역, 우편구역 및 관할구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일반에 공표하는 각종 구역의 기본단위로 한다.

제23조(국가지점번호)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점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국가지점번호는 구조·구급 활동 등의 위치 표시로 활용한다

제25조(주소정보기본도 등의 작성 및 활용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공부 등을 활용하여 주소정보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도면(이하 “주소정보기본도”라 한다)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광고의 게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의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광고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제27조(주소정보 사용 지원) ① 공공기관의 장은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사용과 관련된 산업 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주소정보위원회) ① 주소정보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주소정보위원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주소정보위원회를 두며, 시·군·자치구에 시·군·구주소정보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시·도주소정보위원회 및 시·군·구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에 따른 시·도주소정보위원회 및 시·군·구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1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손해배상 공제 가입, 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3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시행 2021. 6. 9.] [2021. 6. 8. 전부개정]

제40조(국가지점번호판의 철거 등)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지점번호 표기 시설물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관리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 등 긴급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을 할 수 있다.

제43조(사물주소판의 설치 등)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사물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고지 받은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물주소판의 교부를 신청하거나 사물주소판을 직접 제작하여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유형, 지역의 여건 및 설치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물주소판의 설치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등의 승인을 받아 그 설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사물주소판을 설치하는 경우 지면으로부터 1.6미터 이상의 높이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을 안내하는 표지판 등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높이·크기 등을 고려해 설치하는 높이를 달리할 수 있다.

③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사물주소판을 관리해야 하며, 사물주소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시장등에게 사물주소판을 재교부받아 부착·설치하거나

직접 제작하여 설치해야 한다.

④ 사물주소가 부여된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철거 예정일 또는 위치 변경 예정일의 5일 전까지 해당 시장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또는 재교부에 필요한 제작비용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2조(주소정보 산업의 진흥)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과 관련된 산업분야(이하 “주소정보산업”이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가. 국내외 주소정보산업에 관한 현황 및 기술 동향 등의 조사 및 공개

나. 주소정보산업과 관련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1. 주소정보산업의 육성시책 마련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다. 주소정보의 국제협력 및 국외 진출 지원

라. 주소정보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 마련 및 산업표준의 제정·개정

2. 주소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 유형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드론, 지능형 로봇,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용 등

나. 실내 위치의 안내

다. 사물인터넷(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말한다)의 활용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소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주소정보산업에서 활용하는 주소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소정보의 편집·가공 및 유통

나. 산업 분야에서 사용·관리하는 주소정보의 품질인증

다. 민간부문에서 사용하는 주소정보의 보안성 검토

4.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 등

5. 주소정보시설의 유지·관리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지원

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6. 주소정보와 관련된 사업·연구 등을 위한 협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제53조(주소정보관리시스템) ① 주소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는 중앙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시·도에는 시·도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시·군·구에는 시·군·구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둔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의 주소정보관리시스템에서 작성·관리하는 주소정보가 상호 공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참고자료]

※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주소제도

■ 생활속에서 달라지는 주소제도 안내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1.6.8.>

1. 주소체계 고도화 내용

- 2차원 평면개념 주소체계를 3차원 입체개념으로 확대

구분	종전	개선
도로명 부여 대상 도로	▶ 지상도로(지표면) - -	▶ 지상도로 (지표면) ▶ 입체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 내부도로 (건물·구조물 안 통로)

※ 고가도로 위에 위치한 편의시설 및 지하철 승강장 매점에도 주소 부여 가능

- 건물 중심의 주소체계를 사물(사물주소)과 공터(기초번호, 국가지점번호)까지 확대

구분	종전	개선
집 찾기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세종로 411)
동·층·호 찾기	▶ 상세주소	▶ 상세주소(세종로 411, 2동 640호)
사물 찾기	-	▶ 사물주소(세종로 211 줄음쉼터)
공터 찾기	도로변	▶ 기초번호(세종로 300)
	산악등	▶ 국가지점번호(바사 1234 5678)

※ 다중이 자주 찾는 시설물(공원, 버스정류장 등)과 공터에서도 위치찾기 용이

2. 달라지는 사항

- ① 자주 다니는 길에 '도로명 부여 신청' 가능 : 내비게이션 등에서 활용

구분	종전	개선
도로명	- ▶ 변경신청	▶ 부여신청 (시장·군수·구청장) ▶ 변경신청 (시장·군수·구청장)

※ 인근 고가도로, 지하도로, 내부도로에도 도로명 부여신청 가능해짐

- ② 건물 일부를 임대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유자가 상세주소 부여 신청 가능 : 법정주소로 사용

구분	종전	개선
상세주소 부여 신청	임차인 요청있어야 신청	▶ 임차인 요청 없이도 소유자가 신청

※ 임차인은 건물 소유자에게 상세주소 부여를 요청하거나 거부시 직접신청 가능

③ 자주 찾는 ‘시설물과 공터에서 주소 사용’ 가능 : 위치 찾기

구분	종전	개선
사물 찾기	주소 없음	▶ 사물주소 (사물주소판에서 확인)
도로변 공터 찾기	주소 없음	▶ 기초번호 (도로변 기초번호판 확인)

※ ‘21년 완료예정 사물주소 : 육교승강기,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줄음쉼터, 소공원, 어린이공원, 비상급수시설, 인명구조함, 드론 배달점, 둔치 주차장, 지진해일 대피장소, 옥외지진대피장소

④ 매립지 등 ‘행정구역 미결정 지역에서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 가능 : 주소로 사용

구분	종전	개선
행정구역 미결정 지역	도로명주소 신청 불가	▶ 시·도지사 또는 행안부장관에게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

※ 시·군·구 행정구역 미결정시 시·도지사, 시·도 행정구역 미결정시 행안부장관에게 신청

⑤ 도로명주소가 변경(이사 제외)된 19개 핵심공부는 당사자 신청 없이도 해당 공공기관장이 직접 주소 변경 : 국민 불편 해소

구분	종전	개선
도로명주소 변경 처리	개인이 기관방문 신청	▶ 19개 핵심공부는 공공기관장이 신청 없이도 주소 변경

※ 19개 핵심공부 : 가족관계등록부, 건설업등록대장, 건축물대장, 측량업등록부,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 농지원부, 법인등기부, 방문판매업자에 관한 사항, 병적기록표, 사업자등록증, 건물등기부, 성범죄자 등록정보, 성범죄자 공개정보 전용 인터넷 홈페이지, 영업허가 관리대장, 옥외광고사업 등록 사항, 통신판매업자 신고서,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해양조사·정보업 등록부

3. 주소체계 개요

유형	개요	표기 예시
도로명주소	건물의 출입구를 기준으로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이용하여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동·층·호의 출입구를 기준으로 상세주소를 함께 표현하는 주소 ※ 건물 출입구에 건물번호판, 호실 출입구에 상세주소판 부착	 <건물번호판>  <상세주소판> 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 + 건물번호 + 「,」 + 상세주소 ※ 예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평촌길 60, 101호

유형	개요		표기 예시
사물주소	<p>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도로명과 기초번호 등을 이용하여 부여한 주소</p> <p>※ 육교승강기,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줄음쉼터 등에 사물주소판 부착</p>	 <p><사물주소판></p>	<p>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 + 사물번호 + 시설물의 유형</p> <p>※ 예시: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207 버스정류장</p>
공간주소	<p>도로구간의 시작지점부터 끝지점까지를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어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부여한 번호</p> <p>※ 도로변 지주 등에 기초번호판 부착(도로변 위치 찾기)</p>	 <p><기초번호판></p>	<p>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 + 기초번호</p> <p>※ 예시: 서울시 종로구 종로 2345</p>
	<p>건물이 없는 산악·해안 등에서의 위치표시를 모든 기관에서 통일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좌표를 문자로 전환하여 표시</p> <p>※ 산악등에서 50cm 이상 돌출된 시설물에 국가지점번호판 부착(산악 등 위치찾기)</p>	 <p><국가지점번호판></p>	<p>전 국토를 가로·세로 10m의 격자로 나누어 문자(2자리) + 숫자(8자리)로 표기</p> <p>※ 예시: 라마 2120 0425</p>
국가기초구역번호	<p>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국토를 읍·면·동의 면적보다 작게 일정한 경계를 정하여 나눈 구역</p> <p>※ 우편, 학군 등 일반에 공표하는 구역의 기본단위로 활용</p>		<p>숫자 5자리</p> <p>※ 예시: 04549</p>